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366
------	------

202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5.10.20.
-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5.10.23.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12. 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5.12.15)
 -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 낙찰차액 등 사업비 절감액 일부를 신청사 입주 준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2026년도 신청사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치금을 신규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함
-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0원에서 9억 9천 5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2026년도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2025년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임
- 2025년도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 2025년도 지출계획은 시설부대비와 예치금 등 2개 사업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ICT시스템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을 감액 변경하는 것으로
 - 시설부대비는 3억 2,900만원, 예치금은 9억 9,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시설비, ICT시스템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은 △13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366호,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관급자재, ICT 운영 및 사무가구 등 계약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중 일부를 통합관재센터 예비 운영 및 신축건물 베이크 아웃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그 외 2026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말 조성액 변경 (총995,597천원 증가)

- 2026년도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2025년도 예치금으로 편성(연도 말 조성액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24년도 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¹⁾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기정(A)	114,625,979	14,947,051	129,573,030	0
변경(B)	114,625,979	14,947,051	128,577,433	995,597
증감(C=B-A)	0	0	△995,597	995,597

1) 재무활동(예치금) 제외

나.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변경(A)	기정(B)	증 감 (C=A-B)	증감율 (D=C/B)
			합 계	129,573,030	129,573,030	0	0
①			기관운영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교育행정기관시설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기관시설유지관리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신청사 건립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설 계 비	58,118	58,118	0	0
			시 설 비	113,065,560	113,665,560	△600,000	△0.53
			감 리 비	3,692,268	3,692,268	0	0
			시 설 부 대 비	1,150,000	820,723	329,277	40.12
			이 사 비	385,000	385,000	0	0
			미 술 작 품 설 치 비	677,000	677,000	0	0
			ICT 시스템 운영	953,861	1,105,000	△151,139	△13.68
			전 산 망 시 설 비	435,000	435,000	0	0
			ICT 시스템 HW	3,581,795	3,737,360	△155,565	△4.16
			ICT 시스템 SW	1,602,470	1,754,640	△152,170	△8.67
			사 무 레 이 아 웃	2,700,000	2,966,000	△266,000	△8.97
			급 식 기 구	276,361	276,361	0	0
②			재무활동	995,597	0	995,597	100
			예치금	995,597	0	995,597	100
			예치금	995,597	0	995,597	100

3.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에 변동없이 당초 지출계획한 정책사업중 개별 사업내역에 대한 증·감을 통해 지출계획 규모를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기관운영**은 당초 지출계획한 사업내역중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시설비**(△6억원)를 포함한 일부 사업내역은 감액하고, **시설부 대비**는 증액(3억 2,900만원)하려는 것이나, 당초 지출계획보다 △9억 9,500만원, △0.77%를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지출계획하려는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사업인 **기관운영**에서 감액한 9억 9,500만원을 순증하여 예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안 제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²⁾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여³⁾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기금의 설치 · 운용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치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의 경우,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성 기금임에도 그동안 예치금을 지출계획 하지 않은 바, 동 기금을 사실상 사업관리기금처럼 운용함으로써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잉여금을 여유재원(예치금)으로 지출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개별 사업내역에서 발생된 사실상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수입계획중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의를 선택한 것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벗어난 운용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을 적립하는 기금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일 수밖에 없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의회로서는 실제 여유재원의 규모와 수입계획의 적정규모를 파악하는데 혼선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향후 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5920 ('25. 9.30), “2025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생략」

VII. 부대의견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5.12.15)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366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 이유

관급자재, ICT 운영 및 사무가구 등 계약건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중 일부를 통합관재센터 예비 운영 및 신축건물 베이크 아웃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그 외 2026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5년도 말 조성액 변경 (총995,597천원 증가)

- 2026년도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2025년도 예치금으로 편성(연도 말 조성액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1)		'25년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기정(A)	114,625,979	14,947,051	129,573,030	0
변경(B)	114,625,979	14,947,051	128,577,433	995,597
증감(C=B-A)	0	0	△995,597	995,597

1) 재무활동(예치금) 제외

나.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변경(A)	기정(B)	증 감 (C=A-B)	증감율 (D=C/B)
			합 계	129,573,030	129,573,030	0	0
①			기관운영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교육행정기관시설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기관시설유지관리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신청사 건립	128,577,433	129,573,030	△995,597	△0.77
			설계비	58,118	58,118	0	0
			시설비	113,065,560	113,665,560	△600,000	△0.53
			감리비	3,692,268	3,692,268	0	0
			시설부대비	1,150,000	820,723	329,277	40.12
			이사비	385,000	385,000	0	0
			미술작품 설치비	677,000	677,000	0	0
			ICT시스템 운영	953,861	1,105,000	△151,139	△13.68
			전산망시설비	435,000	435,000	0	0
			ICT시스템HW	3,581,795	3,737,360	△155,565	△4.16
			ICT시스템SW	1,602,470	1,754,640	△152,170	△8.67
			사무레이아웃	2,700,000	2,966,000	△266,000	△8.97
			급식 기구	276,361	276,361	0	0
②			재무활동	995,597	0	995,597	100
			예치금	995,597	0	995,597	100
			예치금	995,597	0	995,597	100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 이지은(☎2282-8502)

붙임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 1부. 끝.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제3차)[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25. 1.2. 개정)
- 설치 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필요 재원 연차적 적립·조성
- 설치 연도: 2016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

2) 2025년 기금사업 개요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부서: 청사이전추진단)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부지면적: 13,214.2m²
- 건축규모: 39,937m²(지하 3층, 지상 6층)
- 사업비: 금1,767억원²⁾(보통교부금 금330억원 포함: '21~'22 기교부)

2) 총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기존 수입액 (‘24. 8. 23. 현재) (A)	추가 재원(B)			총 조성액 (C=B+A)	비고
		2025년 교부 전입금(a)	이자 수입 (b)	합계 (c=a+b)		
신청사 건립 기금	1,610	78	79	157	1,767	

- 2025년도 추진계획
 - 공사추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골조공사: 2025년 1월 ~ 2025년 6월
 - 수장·마감공사: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추진
 - 전기, 통신, 소방 공사: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공정에 맞춰 공사 추진
 -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공정에 맞춰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추진
 - 이사 추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이전실행계획에 따라 시행
 - 미술작품 설치: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따라 시행
 - 스마트오피스 구축: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전산망 구축: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가상데스크톱(VDI) 및 클라우드프린팅 구축: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사무레이아웃: 2025년 1월 ~ 2025년 12월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가) 주요 변경 내역

① 기금 조성 총규모

구분	'24년도 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기정(A)	114,625,979	14,947,051	129,573,030	0
변경(B)	114,625,979	14,947,051	128,577,433	995,597
증감(C=B-A)	0	0	△995,597	995,597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비 변경안(청사이전추진단-3629, 2024. 8. 27.)

② 세부사업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목	'25년 지출액 변경(A)	'25년 지출액 기정(B)	증감 (A-B)
기관시설유지관리					
	신청사 건립				
	시설비	420	113,065,560	113,665,560	△600,000
	시설부대비	420	1,150,000	820,723	329,277
	ICT시스템 운영	210	953,861	1,105,000	△151,139
	ICT시스템HW	430	3,581,795	3,737,360	△155,565
	ICT시스템SW	440	1,602,470	1,754,640	△152,170
	사무레이아웃	430	2,700,000	2,966,000	△266,000
재무활동					
	예치금				
		예치금	520	995,597	0
					995,597

나) 변경 사유

- 관급자재, ICT 운영 및 사무가구 등 계약건 낙찰차액 발생
- 통합관재센터 예비운영, 베이크아웃을 위한 계획 변경
- 내년도 신청사 이전조성 관련 추가 소요 예산 예치

다) 기금의 용도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
- 대상: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그 밖에 부대 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3년 말 잔 액 (a)	'24년 계획			'25년 계획안			증감 (h=g-d)
		신규 (b)	처분 (c)	잔액 (d=a+b-c)	신규 (e)	처분 (f)	잔액 (g=d+e-f)	
합 계	140,160,984	2,123,386	27,658,391	114,625,979	14,947,051	128,577,433	995,597	△113,630,382
예치금	140,160,984	2,123,386	27,658,391	114,625,979	14,947,051	128,577,433	995,597	△113,630,382

※ 잔액 = 전년도 말 잔액+신규-처분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2.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5년 수입액 변경 (A)	'25년 수입액 기정 (B)	증 감 (C=A-B)	지출항목	'25년 지출액 변경 (A)	'25년 지출액 기정 (B)	증 감 (C=A-B)
합 계	129,573,030	129,573,030	0	합 계	129,573,030	129,573,030	0
교특회계 전입금	7,800,000	7,800,000	0	기관운영 (비용자성 사업비)	128,577,433	129,573,030	△995,597
기부금	0	0	0	용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 회수	114,625,979	114,625,979	0	재무활동 (예치금)	995,597	0	995,597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수금	0	0	0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7,147,051	7,147,051	0	기본경비	0	0	0
기타	0	0	0	기타	0	0	0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5년 수입액 변경(A)	'25년 수입액 기정(B)	증감 (A-B)
[50000]내부거래				7,800,000	7,800,000	0
	[51000]전입금			7,800,000	7,800,000	0
		[51100]전입금		7,800,000	7,800,000	0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00,000	7,800,000	0
[40000]기타				114,625,979	114,625,979	0
	[42000]예치금회수			114,625,979	114,625,979	0
		[42100]예치금회수		114,625,979	114,625,979	0
			[42101]예치금회수	114,625,979	114,625,979	0
[20000]자체수입				7,147,051	7,147,051	0
	[24000]이자수입			7,147,051	7,147,051	0
		[24100]이자수입		7,147,051	7,147,051	0
			[24101]예금이자수입	7,147,051	7,147,051	0
수입 합계				129,573,030	129,573,030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25년 지출액 변경(A)	'25년 지출액 기정(B)	증감 (A-B)
[050] 교육							129,573,030	129,573,030	0
	[054] 교육일반						129,573,030	129,573,030	0
		[02] 기관운영					128,577,433	129,573,030	△995,597
			[02] 교육행정기관시설				128,577,433	129,573,030	△995,597
				[01] 기관시설유지관리			128,577,433	129,573,030	△995,597
					신청사 건립		128,577,433	129,573,030	△995,597
					설계비	420 건설비	58,118	58,118	0
					시설비	420 건설비	113,065,560	113,665,560	△600,000
					감리비	420 건설비	3,692,268	3,692,268	0
					시설부대비	420 건설비	1,150,000	820,723	329,277
					이사비	210 운영비	385,000	385,000	0
					미술작품 설치비	430 유형자산	677,000	677,000	0
					ICT시스템 운영	210 운영비	953,861	1,105,000	△151,139
					전산망시설비	420 건설비	435,000	435,000	0
					ICT시스템HW	430 유형자산	3,581,795	3,737,360	△155,565
					ICT시스템SW	440 무형자산	1,602,470	1,754,640	△152,170
					사무레이아웃	430 유형자산	2,700,000	2,966,000	△266,000
					급식 기구	430 유형자산	276,361	276,361	0
		[03] 재무활동					995,597	0	995,597
			[05] 예치금				995,597	0	995,597
				[01] 예치금			995,597	0	995,597
					예치금	520 예치금	995,597	0	995,597
					지출 합계		129,573,030	129,573,030	0

3.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가. 성평등 목표

- 성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나.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방향

- 신청사 건립 후 청사에서 근무하는 남·여 비율은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으나 남·여 직원에게 균등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분류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 분류	사업개수	기금운용 계획액(A)	전년도 계획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1개	113,065,560	64,663,141	48,402,419	75%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0개	0	0	0	0%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0	0	0	0%
3. 교육부 지정사업	0개	0	0	0	0%
4. 자체선정사업	1개	113,065,560	64,663,141	48,402,419	75%

라.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 · 정책사업	사업분류 ³⁾				기금운용 계획액		전년도 계획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113,065,560	100%	64,663,141	100%	48,402,419	75%
교육일반	.	.	.	1	113,065,560	100%	64,663,141	100%	48,402,419	75%
기관운영	.	.	.	1	113,065,560	100%	64,663,141	100%	48,402,419	75%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 사업 기준>

대상사업	비 고
1.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2.성별영향평가 사업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3.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4.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마.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구조	(분야) 교육	(부문) 교육일반
	(정책사업) 기관운영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정책과제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청사 건립 시 양성 평등에 입각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남·여 화장실 출입문 분리 및 여자 화장실 면적 확대
 - 수유실 확보 등을 통한 민원인 편의 보장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체선정사업
		○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계획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금액(A-B)	증감률
계	113,065,560	64,663,141	48,402,419	75%
교 특 회 계 전 입 금	7,800,000	0	7,800,000	100%
기 부 금	0	0	0	0%
용 자 금 회 수	0	0	0	0%
예 치 금 회 수	105,265,560	64,663,141	40,602,419	63%
이 자 수 입	0	0	0	0%
기 타	0	0	0	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사업대상자(A)	812명	875명	907명
	사업수혜자(B)	812명	875명	907명
	수혜율(B/A)	100%	100%	100%
여성	사업대상자(C)	496명	545명	564명
	사업수혜자(D)	496명	545명	564명
	수혜율(D/C)	100%	100%	100%
남성	사업대상자(E)	316명	330명	343명
	사업수혜자(F)	316명	330명	343명
	수혜율(F/E)	100%	100%	100%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현황 자료임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2024년 결산액
계	499,730	6,799,305	26,700,006
여성(비율) (D/B)	305,254(61.1%)	4,234,996(62.3%)	16,607,403(62.2%)
남성(비율) (F/B)	194,476(38.9%)	2,564,309(37.7%)	10,092,602(37.8%)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신청사 건립 후의 남·여 직원 규모는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의 직원 비율 (남성: 37.8%, 여성: 62.2%)에 따라 신청사 건립 설계 시, 여자 화장실 면적 확대, 수유실 설치를 통해 특정 성별에 차이 없는 시설 이용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치
균등기회 제공	성별수혜율격차	0.90	0.91	0.96

- 산출근거: (전체 화장실 면적 중 여성화장실 면적 비율)/(전체 직원 중 여성직원 비율)

□ 성평등 기대효과

- 남·여 화장실 출입문 분리를 통한 출입 동선 분리로 화장실 이용에 따른 위화감을 낮추고자 하며, 여자 화장실 면적 확대를 통해 성별 차별성(양변기 위주)에 따른 화장실 이용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 신청사 내 수유실 확보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민원업무 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4. 기금 운용 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2016	5,927,675	5,908,775	18,900	0	0	5,927,675
2017	12,005,511	11,930,655	74,856	43,898	43,898	11,961,613
2018	28,368,649	27,957,862	410,787	967,182	967,182	27,401,467
2019	7,820,340	7,526,520	293,820	3,500,484	3,500,484	4,319,856
2020	14,004,123	13,252,067	752,056	3,677,094	3,677,094	10,327,029
2021	16,868,429	15,987,427	881,002	1,028,590	1,028,590	15,839,839
2022	42,816,606	41,015,324	1,801,282	3,424,678	3,424,678	39,391,928
2023	31,818,230	31,127,445	690,785	6,826,653	6,826,653	24,991,577
2024	2,123,386	0	2,123,386	27,658,391	27,658,391	△25,535,005
2025	14,947,051	7,800,000	7,147,051	128,577,433	128,577,433	△113,630,382
합계	176,700,000	162,506,075	14,193,925	175,704,403	175,704,403	995,597

※ (금액 산출) 2016 ~ 2024: 결산 기준, 2025: 계획 기준

나.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23년도 말 현재액	‘24년도 말 현재액(a)	’25년도 말 현재액(b)	증감 (b-a)
예치금	NH농협은행	140,160,984	114,625,979	995,597	△113,630,382

※ 2023~2024년도말 현재액은 결산액 기준, 202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 기준